탄핵·하야는 즉각 직무정지…尹 강제수사도 변수

윤 대통령 직무정지 시나리오는

하야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시 헌재 6인 체제도 논란
구속시 '사고'로 볼지 관건
법조계 해석 놓고 의견 분분
어떤 경우든 국정 공백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애매한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국정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과 내각이 임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혼란은 즉시 해소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된다.

하야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하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중단할 방법은 탄핵뿐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여당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때까지 3개월간 직무 정지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현 국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중이고,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요청한 상태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되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대통령이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사고'로 볼지가 쟁점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내란사태 특별대책위' 출범

30여명 규모, 위원장에 김민석 최고… "탄핵 이외 다른 길 없어"
"탄핵안 정리되는 즉시 국회 사절단 보내 트럼프 인수위 만나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징계 명령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숨겨온 가면을 철저히 밝혀 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부정선거 선동과 함께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지속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전두환'을 꿈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정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한 번 총구를 들이댄 자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추진단' 단장인 윤호중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아직 군 통수권자'라는 말이 보도되자마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며 "내수·수출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루빨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한국 간의 외교 계통 확보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협력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정리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 트럼프 인수위원회, 상·하원, 싱크탱크와 언론을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주 3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여의도 집회 참석 시민들을 위해 민주당 당사 앞에 쉼터를 설치했으며 국회 앞에서 노숙 시위하는 시민에게 천막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외교 최종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헌법 틀 내에서 진행"

"국가원수는 대통령" 답변…윤 대통령에 결정권 있다는 취지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어 '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권한 행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향후 한미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은 미·일·중국의 주한공관 인사들과 회동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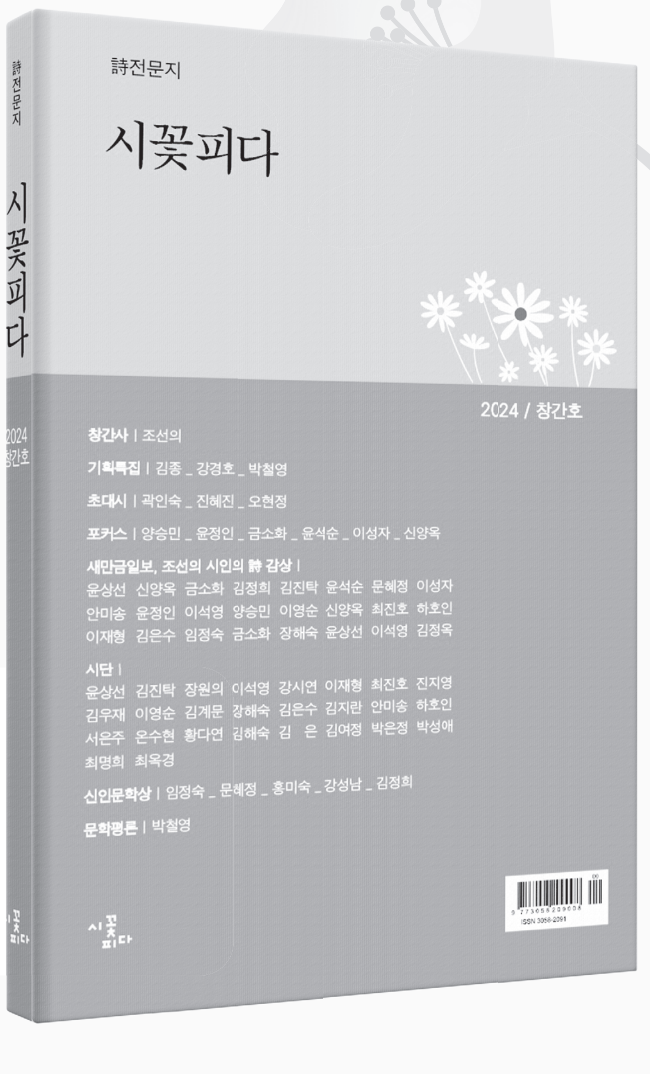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